

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[별표 4의4] <개정 2016. 7. 19.>

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 (제8조의2 관련)

위반행위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
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평가결과가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	2천만원	5천만원